



국 토 교 통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버스 영상기록장치 일제 점검 협조 요청

1.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연합회(조합)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7조의3에 따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영상기록장치의 운영·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3. 상기 법률 조항 취지상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 상시 녹화되어야 함이 타당하나, 실제로는 설치된 버스 영상기록장치가 녹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 귀 연합회(조합) 소속 회원사 버스 영상기록장치의 작동 여부(녹화 여부)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각 조합별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3.29(금)까지 우리 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각 연합회에서 취합 후 제출(박준영 주무관 이메일 : park9685@korea.kr)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수신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,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

주무관 **박준영** 시설사무관 **이승학** 교통서비스정책과장 **이주열** 전결 2024. 2. 27.

협조자

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-1318 (2024. 2. 27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,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830 팩스번호 044-201-5581 / park9685@molit.go.kr / 비공개(5)